



인권이사회

제 34 차 회기

2017 년 2 월 27 일-3 월 24 일

의제 4

인권이사회 주의를 요하는 인권 상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

유엔 사무국 Note

본 보고서는 현 특별보고관 위임권한 수행자가 2016 년 8 월 임명된 후 처음으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28/22 에 의거하여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이다.

본 보고서가 다루는 기간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두 차례 핵 실험을 시행하고 여러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여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되었다. 동시에 해당국은 유엔 인권 메커니즘 일부와 협력하는 긍정적인 조치도 취하였다.

특별보고관은 전임 특별보고관이 추진해 온 병행전략(two-track approach)을 이어간다. 병행전략은 인권 침해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도록 해당국 당국 및 기타 행위자와 대화를 시도한다.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자 여러 행위자가 취해온 조치를 환영한다.

*본 보고서는 최근 전개 상황 반영을 위해 기한을 넘겨 제출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목차

I.	서문	3
II.	최근 전개 상황.....	3
	A. 정치 및 안보 상황	3
	B. 2016년 8월 홍수 영향.....	5
	C.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엔 인권 메커니즘 참여	7
III.	특히 관심을 요하는 우려 사항	7
IV.	향후 방향.....	11
	A. 특별보고관 협력 노력	11
	B. 책임규명 독립전문가그룹	12
	C. 서울유엔인권사무소	13
	D. 시민사회단체	13
V.	결론 및 권고.....	14

I. 서문

1. 본 보고서는 현 특별보고관 위임권한 수행자가 2016년 8월 임명된 후 처음으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28/22에 의거하여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이다. 본 보고서 부속서(A/HRC/34/66/Add.1)로 독립전문가그룹(Group of Independent Experts) 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독립전문가그룹은 인권이사회 결의 31/18에 의거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 책임 규명 방안을 검토하도록 임명되었다. 특히 조사위원회가 2014년 반인도범죄에 준한다고 결론 내린 인권 침해(A/HRC/25/63) 책임 규명 방안을 검토한다. 특별보고관은 본 보고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과 관련하여 주요 전개 상황을 간략하게 검토한다. 정치 및 안보 상황, 2016년 8월 북동부에서 발생한 홍수 영향, 해당국 정부가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협력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이어 특별보고관은 첫 동북아 방문에서 파악한 인권 사안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여러 관계자가 기울여 온 노력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병행 전략이 주요함을 언급한다.¹

2. 201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과 관련하여 상반되는 전개가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여러 차례 핵 및 미사일 실험을 시행하면서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되어, 주요 인권 사안을 논의하는 국제 대화가 중단되었고 인도적 지원 전달이 지연되었다.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 인권 의무를 따르는 유의미한 조치를 취하였다. 2016년 12월 6일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비준하였고,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CEDAW)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특별보고관을 포함하여 유엔 인권 메커니즘 관계자에 국가 방문을 허용하지 않아 앞서 취한 조치가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할 수 없었다.

II. 최근 전개 상황

A. 정치 및 안보 상황

경제 및 핵 개발 병진노선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6년 최고지도자 김정은에 국내 정치 권력을 통합하는 데 주력했다. 조선로동당은 1980년 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2016년 5월 제 7차 당대회를 개최하였다. 김정은은 당대회에서 당 위원장으로 추대되었고, 경제 개발과 핵 역량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노선을 개괄적으로 발표했다.² 당대회 이후 5개년 경제 개발 전략이 채택되었다. 5개년 계획을 발표 시 김정은이 국내 전반에 확대되는 시장화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제재 조치가 잠재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할만하다. 제 13기 제 4차 최고인민회의가 2016년 6월 개최되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최고 군사 결정 기구인 국방위원회가 국무위원회로 교체되었고, 김정은이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일련의 정치 행사가 개최되는 와중에 일 년 동안 두 차례 핵실험이 있었고 (제 4차 핵실험은 2016년 1월 6일, 제 5차 핵실험은 2016년 9월 9일 시행) 사정거리별 미사일을 여러 대 발사하였다.

¹ 특별보고관 및 독립전문가그룹 보고서를 사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공유하여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하였다.

² 조선중앙통신(평양)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2016년 5월 7일

4. 김정은은 경제와 핵 개발 병진노선을 2017년 신년사에서 언급했다. 먼저 경제 개발 5개년 전략을 이행하는 데 국가적 노력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주력할 분야 일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인민 생활 향상이나 교육, 공중 보건 및 문화 등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동시에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며,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다.³

긴장 고조 및 고립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6년 여러 차례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시행하면서 국제공동체에서 더욱 고립되었다. 안보리 결의 다수를 위반하였으며, 한반도를 비롯하여 동북아 역내 긴장을 상당히 고조시켰다. 핵 실험 때마다 안보리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상 제재 조치를 강화했다.⁴ 이중용도 품목을 포함하여 무기 금수와 확산 방지 조치를 확대했다. 연간 석탄 수출량에 상한선을 두는 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화 벌어들임도 제한했다. 결의 2321(2016)는 민생 관련 예외 조치 적용 범위를 제한했는데, 예를 들어 석탄 수출 허용 요건을 강화했다. 개별 국가 제재 조치가 시행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타국 간 인적 및 물자 교류를 제한했다. 대한민국은 2016년 2월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개성공단 내 대한민국 기업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이 근무했다. 특별보고관은 안보리 제재 조치가 일반 주민 민생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으며, 국제공동체는 제재 조치가 잠재적으로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권 대화에 미친 영향

6. 긴장 고조와 고립 심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타국 간 인권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남북 휴전선을 기준으로 헤어진 가족 간 상봉행사도 2015년 10월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못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6년 1월 핵 실험을 시행하고, 2월에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하여 미사일을 발사하였는데, 이에 대응하여 일본이 “자체(autonomous) 제재 조치”를 취했다.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일본 국적자 관련 조사를 전면 중단하고 2014년 스톡홀름 합의에 의거하여 설립된 특별조사위원회를 해체한다고 발표했다. 스톡홀름 합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납치 피해자 및 기타 실종자를 포함하여 일본 국적자 모두를 포괄적으로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7. 김정은이 2017년 신년사에서 남북 통일을 언급한 점은 주목할만하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올해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는 매우 의미깊은 해로 되도록 그 무엇인가를 하여야 한다”고 언급했다.⁶ 더불어 올해가 1972년 7월 4일 채택한 남북 공동성명 45주년, 2007년 10월 4일 남북 공동선언 10주년이 되는 해임을 강조했다. 특별보고관은 앞서 언급한 기념일을 기회로 유의미하게 대화를 나누고, 인권 사안을 논의하길 희망한다.

³ 유엔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부, “보도 자료: 김정은 신년사”(No.1/01/17) (2017년 1월 2일)

⁴ 결의 2270 (2016) and 2321 (2016).

⁵ http://www.mofa.go.jp/a_o/na/kp/page3e_000628.html 참조

⁶ 유엔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부, 보도 자료(No.1/01/17)

B. 2016년 8월 홍수 영향

8. 2016년 8월 말 태풍 라이언록의 영향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동쪽에 폭우가 내렸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해방 후 기상 관측 이래 처음 보는 돌풍이 불어치고 무더기비가 쏟아져”라며 태풍 라이언록을 언급했다.⁷ 태풍 라이언록으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하여 함경북도와 량강도 거주지 및 농작지에 피해를 입혔다. 강둑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서두수 발전소가 방류를 한 탓에 자연재해 피해를 더 키웠을 가능성이 있다.⁸

9. 홍수로 2016년 10월 기준 138명이 사망, 400명이 실종되었다.⁹ 수재민이 60만 명 가량 발생했고, 이 중 특히 14만 명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이재민 70만 명이 발생했다. 가옥 3만 채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다.¹⁰ 도로 180여 개, 다리 60여 개가 파괴되었고, 농경지 2만 7400 헥타르가 유실되거나 침수되었다고 알려진다.¹¹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자국 내 활동 중인 국제인도주의단체에 인도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유엔 기구가 합동으로 2016년 9월 6일에서 9일 사이 태풍 피해 지역을 살펴보도록 했다.¹² 2016년 11월 18일부터 22일 사이에 유엔 기구는 재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였다. 방문 기간 동안 피해 지역 여섯 곳 중 세 곳(연사, 무산, 회령)을 방문했지만 나머지 세 곳(온성, 경원, 경흥)은 방문할 수 없었다.¹³ 특별보고관은 구급 시설 및 감옥에 있는 이들을 포함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인도적 지원 활동가가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재차 요청한다.¹⁴

1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9월 10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에게 호소문을 보내 북부 피해 복구에 참여하길 촉구했다.¹⁵ 민간인 23만 명과 군장병 14만 명이 복구에 동원된 것으로 파악된다. 11월 말 기준 1만 2천 가구 가량을 수용할 주택 3천 채 이상이 건설되었다고 한다.¹⁶

⁷ “조선중앙통신(평양)당중앙위 호소문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기적적승리 쟁취하자”

2016년 9월 11일; “인민을 최우선시하는 조선로동당 철칙” 2016년 9월 12일

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유엔 상주조정관 “함경북도 홍수-합동 영향 평가 보고서” (평양, 2016년 9월 11일),

http://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20160916%20DPRK_North%20Hamgyong%20Floods%20Joint%20Assessment%20Report.pdf 참조, <http://kp.one.un.org/content/unct/dprk/en/home/emergency-response/floods-2016.html>,

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nkflood-09212016161854.html,

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4505&num=109176.

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유엔 상주조정관 보도자료 “폭우와 홍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큰 타격” (평양, 2016년 10월 14일)

¹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유엔 상주조정관 “함경북도 홍수 피해 지역 합동 방문 평가 11월

18일-23일” (평양, 2016년 11월 23일), <http://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Joint%20Review%20Mission%20to%20Flood%20Affected%20Areas%20Nov%202016%20Report.pdf> 참조.

¹¹ 조선중앙통신(평양) “함경북도 큰물 복구 전선에 군과 인민전력 집중”, 2016년 9월 14일

¹² 함경북도 홍수 합동 영향 평가

¹³ 함경북도 홍수 피해 지역 합동 방문 평가

¹⁴ 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0543&LangID=E 참조

¹⁵ 조선중앙통신(평양), “당 중앙위” 및 “인민 최우선 철칙”

¹⁶ 함경북도 홍수 피해 지역 공동 방문 평가 5쪽

12. 홍수로 피해 지역 거주자 인권이 여러모로 침해받았다. 적합한 보건 기준 권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 및 위생에 대한 접근성이 심각하게 제한되었는데, 2016 년 12 월 기준 피해 지역은 수동 급수 펌프, 우물 및 정수제에 의존하고 있다.¹⁷ 보건 시설 45 곳이 피해를 입어, 해당 지역 거주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다.¹⁸ 경작지 뿐 아니라 작물과 텃밭이 피해를 입어,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의 식량권도 영향을 받았다.¹⁹

13. 소학교 및 고등중학교, 유치원 및 보육 시설 107 곳이 파괴되었고, 학생 8360 명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²⁰ 당국은 홍수로 파괴된 보육 시설, 유치원 및 학교를 우선적으로 재건하도록 했고, 홍수 피해 지역에 소비재 전달 운동을 벌였다.²¹ 유엔과 해당국 정부가 2016 년 11 월 합동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해당 지역(provincial) 당국은 보육 시설 및 유치원에 식량 원조가 계속되어야 함을 강조했다.²²

14. 홍수 피해 복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인도주의 지원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 모두에게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피해 지역 사회기반시설과 도로로는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못했는데, 특히 해당 지역은 산악 지역이며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 있다.²³ 피해 지역 식량 및 보건 시설이 이미 상당히 제한적으로 제공되는데, 피해 복구에 투입된 인력으로 부담이 더해졌다고 알려진다.²⁴

15. 여러 사법기관 구급 시설 및 교화 시설에 구급된 이들이 처한 상황도 우려된다. 회령시에 적어도 한 개 교화소 (교화소 12 호)가 위치하며 회령은 홍수 피해가 가장 심각한 도시이다.²⁵ 함경북도 청진시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되는 정치범 수용소 25 호가 홍수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정보가 부재하다.²⁶

16. 특별보고관은 국제 긴급 구호 자금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에 우려한다. 유엔 상주조정실에 따르면 2016 년 12 월 10 일 기준 긴급 구호에 필요한 2 천 8 백만 달러 중 38 퍼센트만 모금되었다.²⁷ 마찬가지로 국제적십자사도 2016 년 9 월 기준 긴급 모금

¹⁷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유엔 상주조정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홍수: 인도적 현황”, 평양 (2016 년 12 월 10 일),

<http://reliefweb.int/report/democratic-peoples-republic-korea/dprk-floods-humanitarian-dashboard-10-december-2016> 참조

¹⁸ 유니세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함경북도 홍수 대응 최근 상황” (2016 년 10 월 28 일).

¹⁹ 식량농업기구, “조기경보시스템(GIEWS) 국가 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6 년 12 월 16 일), www.fao.org/giews/countrybrief/country/PRK/pdf/PRK.pdf 참조

²⁰ 유니세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함경북도 홍수 대응 최근 상황”

²¹ 조선중앙통신(평양) “큰물 피해 지역 교육 시설 복구 우선” 2016년 10월 5일, “큰물 피해 지역 소비재 전달 증가”, 2016년 10월 5일

²² 함경북도 홍수 피해 지역 공동 방문 평가 5 쪽

²³ 유니세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함경북도 홍수 대응 최근 상황”

²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홍수: 인도적 현황” 및 www.asiapress.org/korean/all/nk-kore-flood-damage-02/ 참조

²⁵ 통일연구원, 2016 북한인권백서 (서울, 2016) 105 쪽. 워싱턴에 위치한 비정부기구

북한인권위원회는 위성 사진을 근거로 12 호 교화소가 홍수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있다.

교화소로 이어지는 도로가 홍수로 끊겼고 작물도 피해를 입었다. Joseph S. Bermudez Jr., Greg Scarlatoiu,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2 호 전거리 교화소 및 홍수 영향 (2016 년 9 월 16 일,

북한인권위원회, 2016), www.hrnk.org/publications/hrnk-publications 참조.

²⁶ Joseph S. Bermudez Jr., Andy Dinville, Mike Eley,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5 호 정치범수용소, 2016 년 11 월 29 일 (북한인권위원회, 2016).: www.hrnk.org/publications/hrnk-publications.php 참조.

²⁷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홍수: 인도적 현황”

목표액 1 천 5 백만 스위스 프랑 중 25 퍼센트만 모금할 수 있었다.²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긴급 구호 모금이 어려운 데 여러 요인이 있다. 전세계 여러 지역이 위기 상황이며, 한반도 내 긴장도 고조되었다. 그렇지만 특별보고관은 정치 또는 안보 우려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인도주의 지원을 가로막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C.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엔 인권 메커니즘 참여

17.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협력을 확대한 것을 고무적으로 본다. 제 2 차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 시 약속대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에 2016 년 4 월과 5 월에 각각 국가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아동권리위원회는 2017년 9 월 해당 보고서를,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같은 해 10 월 해당 보고서를 검토할 예정이다. 보고서 검토를 기회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권 의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기회 삼아 현장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

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6 년 12 월 6 일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였다. 해당 협약 비준은 2014 년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에서 수용한 권고 이행으로 유의미한 조치이기에, 특별보고관은 이를 환영한다.²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6 년 12 월 6 일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였다. 해당 협약 비준은 2014 년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 시 수용한 권고 이행으로 유의미한 조치이며, 특별보고관은 이를 환영한다.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도 마찬가지로 협약 비준을 환영하며, 해당 협약 이행에 기술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음을 재차 밝혔다.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총 5 개의 주요 인권 협약을 비준했다.

19. 특별보고관은 유엔 전략 지원 프레임워크 2017-2021 (United National Strategic Assistance Framework) 에 인권 중심 접근을 적용했음을 환영한다. 유엔 전략 지원 프레임워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유엔 기구 활동 시 우선순위를 정한 것으로, 해당국 정부도 합의(co-signed)하였다.³⁰ 유엔 전략 지원 프레임워크에 언급된 바, 유엔 상주조정실은 2014 년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 시 수용한 권고 및 국제인권협약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원한다.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상주조정실 활동을 환영하며,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에서 수용한 권고 및 국제인권협약 의무 이행 후속 조치를 취하는 데 상주조정실 및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III. 특히 관심을 요하는 우려 사항

20. 특별보고관은 2016 년 11 월 대한민국과 일본을 처음 방문했다. 방문동안 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이탈한 이들을 만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경험을 들을 수 있었다.³¹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과 관련하여 비정부기구, 정부기관 및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 등 여러 정보 출처로부터 정보를 수집했다.

²⁸ www.ifrc.org/en/news-and-media/press-releases/asia-pacific/korea-democratic-peoples-republic-of/ifrc-president-konoe-highlights-continued-humanitarian-needs-of-flood-survivors-following-dprk-visit/ 참조

²⁹ 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1051&LangID=E 참조

³⁰ <http://kp.one.un.org/content/unct/dprk/en/home/news/UNSF-launch2017.html> 참조

³¹ 특별보고관은 방문 기간 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떠나 대한민국에 도착한 이들이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에 일정기간 머문(be held)다고 들었다.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과 일본 방문을 준비 및 지원해 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감사한다. 아래는 대한민국과 일본 방문 시 제기된 인권 사안을 조명한다.

정치범 수용소

21. 특별보고관은 정치범수용소 내 인권 상황과 관련 정보를 접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정치범수용소 존재를 부정하지만, 심각한 정치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구금되어 있는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는 조사위원회(A/HRC/25/63, 문단 59-61 참조) 및 기타 자료에 광범위하게 기록되어 있다. 정치범 수용소 최소 네 곳(14 호, 15 호, 16 호, 25 호)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한 곳(18 호)도 운영 중일 가능성이 있다.³²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 경우, 가족이 소식이나 생사를 알 수 없다. 정치범 수용소 내 구금된 이들 수는 8 만에서 12 만으로 추정되지만(A/HRC/25/63, 문단 61) 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부재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국제법상 강제 실종에 준할 수 있다.³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과거 “정치범 수용소”는 존재하지 않으며 완벽하게 날조된 이야기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상 로동교화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해당 교화 기관에서 형기를 채운다”고 말한 바 있다(A/HRC/27/10, 문단 60 참조).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 메커니즘 및 관련 국제시민사회단체가 앞서 언급한 “교화 시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정치범 수용소 구조, 수감자 수, 수감 환경 등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³⁴ 정치범 수용소 관련 심각하고 걱정스러운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반드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여 이행할 필요가 있다.

납치 및 가족 분리

22. 특별보고관은 방문 기간 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관련된 것으로 과거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납치되거나 실종된 이들 사례를 접했다. 비록 수십 년 전에 발생한 납치 의심 건이지만 납치되거나 실종된 이들 생사를 확인하는 신뢰할 정보가 없어서 친인척에게 지속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일본의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4 년 스톡홀름 합의에 의거하여 일본 국적자를 조사할 특별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조사 대상은 납치된 일본 국적자와 한반도 태생 배우자를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건너 간 일본 국적자 행방을 포함한다. 하지만 2016 년 1 월 핵실험과 2 월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³² 통일연구원, 2016 백서 400 쪽,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북한 정치범수용소 근무자, 수감자 및 실종자 인명 사전 (서울, 2016) 11 쪽, Bermudez,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5 호 정치범수용소”

³³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에 따르면 (A/RES/47/133)(1992) “강제실종”은 “당사국의 요원 혹은 당국의 허가, 지원 혹은 묵인 하에 일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체포, 구금, 납치 혹은 모든 형태의 자유 박탈과 뒤이어 그러한 자유 박탈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생사 또는 행방을 은폐하여 이러한 사람을 법의 보호 밖에 두는 것으로 간주한다”

³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민 및 정치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경제, 사회 및 문화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상 다섯 개의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협약 당사국이다. 앞서 언급한 협약은 구금 환경 관련 여러 인권 보장을 명시한다. 유엔은 또한 구금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준을 채택했다. 해당 기준이 법적 효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구금된 이들 처우 관련 신뢰할만한 지침을 제시한다.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만델라 원칙), 모든 형태의 억류, 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법집행 공직자 행동 강령, 고문 및 그밖에 잔학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 내지 처벌로부터 피구금자와 피억류자를 보호하는 보건의원, 특히 의사의 역할에 관한 의료 윤리 원칙, 여성수용자 처우와 여성 범죄자 사회 내 처우에 관한 규칙 (방콕 원칙), 소년 사법 운영 최소 표준 규칙 (베이징 원칙) 등의 기준이 있다.

일본이 “자체 제재 조치”를 취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스톡홀름 합의에 의거하여 진행해오던 일본 국적자 전원 생사 관련 전면 조사를 모두 중단하며, 특별조사위원회는 2016년 2월 12일을 기점으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³⁵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에 해당 조사를 재개하고 납치자 생사를 확인할 것을, 일본 정부에 해당 사안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23. 특별보고관은 한국전쟁으로 친인척과 헤어진 이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별보고관은 휴전선을 기준으로 가족과 비자발적으로 헤어진 이들이 고령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남북 정부가 친인척 생사를 확인하도록 신속하게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길 촉구한다.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주의 및 인권을 고려하여 지체없이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보 접근

24.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최근 몇 년 사이 외부 정보 접근 제한을 유지하거나 더욱 강화했다고 들었다. 동시에 특별보고관은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십 년 전과 비교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더 많은 이들이 외부 정보를 접하고, 국외에 있는 이들과 더 많은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고 들었다. USB 나 메모리카드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외에서 밀수 및 유입된 시청각 자료를 공유하고, 중국이나 대한민국에서 송출되는 라디오 방송을 듣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경 브로커는 대한민국에 있는 친인척과의 통화를 비롯하여 국제 전화를 중계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통화 비용은 상당히 높으며, 통화 시간도 수 분을 넘기기 어려워진다. 당국이 알아챌 우려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방식으로 헤어진 가족 간 연락을 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친인척에게 송금을 할 수 있다.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앞서 언급한 변화를 기회로 삼아 자국민과 소통하고 외부 세계에 통합되어 협력하길 촉구한다.

식량권

25. 조사위원회는 1990년 대 중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발생한 기근이 어떠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는지 기록했다. 근래 몇 년 간 식량 사정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많은 주민이 식량 불안정성에 시달리도록 하는 상황이 여전하다. 자연 환경이나 인간이 초래한 상황 때문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여타 36개국과 함께 외부 식량 원조가 필요한 국가로 지정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식량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2016년 8월 홍수가 경작지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다.³⁶ 특별보고관은 많은 가구가 자체 상거래로 식량을 확보한다고 파악했다. 하지만 자체 상거래 합법 여부가 불명확하여 식량 불안정성을 초래한다. 지역(local) 정부관계자가 임의로 상거래 허용 여부를 결정하거나 상거래 참여자가 지불할 수 있는 뇌물 금액에 따라 상거래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조선로동당이 2016년 제 7차 당대회 전후로 70일 전투나 200일 전투를 벌이면서 노동 참여를 강제하였고, 식량 안정성 확보에 결정적인 주민 상거래를 제한했다고 알려진다.³⁷ 대다수가 식량 배급을 받지 못하고, 받더라도 충분치 않기 때문에³⁸ 상거래 활동이 식량 안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상거래 참여가 식량 안정성에

³⁵ 로동신문 (평양) “조일간 정부 합의를 파기하는 일본 도발” 2016년 2월 15일.

³⁶ 식량농업기구, “외부 식량 원조가 필요한 국가”, 2016년 12월,

www.fao.org/giews/country-analysis/external-assistance/en/ 참조

³⁷ 서울유엔인권사무소 아시아프레스 면담, 2016년 5월 11일, 서울유엔인권사무소 회의록 참조, 데일리NK (서울) 강미진 “골목장 통제로 주말 발판”, 2016년 3월 9일,

www.dailynk.com/english/read.php?num=13789&catId=nk01500 참조.

³⁸ 통일연구원, 2016 백서, 261 쪽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2016년 5월 당대회 때 5개년 경제 개발 전략을 채택하였으나, 민간 상거래나 시장 활동을 언급하지 않았다. 주민 식량 안정성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상거래 및 시장 활동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주민이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외노동자

26. 특별보고관이 동북아 방문시 만난 관계자 대다수가 해외노동자 문제를 제기했다. 해외노동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외화벌이에 상당히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임금 상당 부분(60-90 퍼센트)을 국가가 “충성 자금”이나 해외노동자 파견 담당 국가 사업소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떼어간다.³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해외노동자를 파견했던 국가 수가 한 때 45 개국에 달했다.⁴⁰ 해외노동자는 본국에서 파견된 관리자의 엄격한 감독 하에 일을 하며, 이동, 표현 및 결사의 자유가 없다고 알려진다. 또한 근무 시간이 길고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거나 최소 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안전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 등 국제 노동법 기준을 심각하게 어기는 상황에 노출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나가는 것은 외화를 벌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로 여겨지며, 주민들이 담당자에게 뇌물을 주어서라도 해외노동자로 파견되도록 힘을 쓴다고 특별보고관은 파악했다.⁴¹ 특별보고관은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노동자를 수용한 회원국과 고용한 기업이⁴²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고 국제 노동 및 인권 기준을 준수하도록 세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탈자

27.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이탈한 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떠나는 동기가 된 인권 침해는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다. 특별보고관은 또한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릅쓰고 해당국을 떠나오면서 겪어야만 했던 어려움도 알 수 있었다. 특별보고관은 탈북민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과 여러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미래를 고대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특별보고관이 만나 이야기 나누는 여성 대부분은 인신매매 피해자였다. 조사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국경을 건너 중국으로 별다른 도움없이 넘어간 여성과 여아 많은 수가 인신매매 피해자라고 파악하였고, 주로 강제결혼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이다.⁴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떠나오는 여정 도중 강제로 복송되고 복송 후 구금될 위험이 여전히 높다.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중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아이를 중국에 두고 온 여성들도 만났다. 특별보고관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이들 여성은 아이들과 다시 함께 할 수 있길 희망했다. 앞서 언급한 상황에 처한 아이들이 몇 명이고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정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국적 상태의 아이들은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관련하여 한반도 내 비자발적 분리 가족을 다룬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에서 강조했듯이 “[여성 탈북자가] 중국 내 아이를 찾고

³⁹ 상동, 477-480 쪽

⁴⁰ 아산정책연구원 신창훈, 고명현, *아산리포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이후* (아산정책연구원, 서울, 2014), <http://en.asaninst.org/contents/asan-report-beyond-the-coi-dprk-human-rights-report/> 참조

⁴¹ 통일연구원, *백서 2016*, 472 쪽.

⁴²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HR/PUB/11/04)*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제네바, 2011), 원칙 12, 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GuidingPrinciplesBusinessHR_EN.pdf 참조

⁴³ A/HRC/25/63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조사위원회 상세 보고서” 참조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부재하다”는 점을 재차 상기한다.⁴⁴ 이는 즉각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안이다.

VI. 향후 방향

28. 특별보고관은 전임 특별보고관이 추진한 병행 전략을 이어갈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과 협력하여 해당국이 인권 의무를 수행토록 장려할 것이다. 더불어 인권 침해, 특히 반인도범죄에 준하는 침해 혐의를 다루려면 가해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러한 병행 전략은 상호 도움이 되며, 인권 상황을 유의미하고 지속성있게 개선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29. 특별보고관은 병행 전략 추진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인지한다. 안보리가 여러 차례 채택한 제재 조치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더욱 고립시켰다. 마찬가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 등 책임 규명 추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이 반발하였다.

30. 하지만 특별보고관은 병행 전략을 추진할만한 여력이 있다고 본다. 특별보고관은 아래에서 특별보고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주요 관계자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금까지 취한 조치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A. 특별보고관 협력 노력

31. 특별보고관은 2016년 8월 1일자로 임명된 후 제네바와 뉴욕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부와 서신을 교환하여, 해당국 내 인권 상황 관련 대화를 요청했다. 특별보고관은 2016년 11월 동북아 방문을 준비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방문할 수 있도록 제네바 주재 대표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안타깝게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당 방문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국가를 특정하는 특별보고관 위임권한이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는 오랜 입장을 고수했다. 특별보고관은 이에 응답하여 해당 위임권한을 독립전문가로 수행함을 상기하고, 해당국 정부가 국가 방문을 긍정적으로 고려하여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더욱 적극 협력하여, 국민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기회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2016년 11월 유엔 총회 때 제 3 위원회가 열리는 기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는 특별보고관이 위임권한 수행자가 아니라 법학 교수라는 개인 자격으로는 국가를 방문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⁴⁵ 특별보고관은 위임권한 수행자로 국가를 방문하여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과거 해당 위임권한과 협력을 거부하는 근거로 특별보고관 보고서가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제 및 정책을 매도”했다고 말했다”(A/HRC/13/13, 문단 49). 특별보고관은 신임 위임권한 수행자로 해당국 주장대로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했다면 대화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별보고관이 국가를 방문하여 정부 기관을 비롯하여 여러 관계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집하도록 해야 한다.

3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특정 국가 사안을 다루는 위임권한이 차별이며 정치적이라고 주장하여 특별보고관 위임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인권이사회

⁴⁴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분단의 아픔: 인권으로 접근한 한반도 비자발적 가족 분리*(인권최고대표사무소, 제네바, 2016), 문단 73.

⁴⁵ 유엔 주재 김인룡 대사 기자회견, 2016년 11월 15일, <http://webtv.un.org/media/watch/kim-in-ryong-dprk-press-conference-15-november-2016/5211267770001> 참조

특별절차 주제별 위임권한이 특정 국가 상황을 다루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 내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의미한 지원을 제공한다. 더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제 2차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에서 수용한 권고에 의거하여 특별보고관은 해당국 정부가 다음의 주제를 다루는 특별절차와 협력하길 촉구한다. 장애인 인권, 극빈과 인권, 일방적 강제 조치가 인권 향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교육권, 신체 및 정신 건강의 최고 도달가능한 수준을 모두가 향유하기 위한 권리, 식량권,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요소로서 적절한 주거 시설 및 관련하여 차별을 겪지 않을 권리, 개발권,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 의사와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권,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굴욕적 대우 및 처벌, 종교 및 신념의 자유, 진실, 정의, 배상의 촉진과 재발방지, 문화권, 여성폭력 실무그룹, 강제 및 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등이다.

33.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동권리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협력을 계속하길 촉구한다. 특별보고관은 또한 해당국 정부에,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 장애인권리위원회와 대화를 하여 관련 인권 협약 당사국으로서 국제 의무를 수행하도록 촉구한다.

34. 특별보고관은 2016년 8월 임명을 받은 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 정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인도주의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여러 기관과 연락을 취했다.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이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시 수용한 권고를 중심으로 국제 인권 의무를 이행하는 데 실질하게 필요한 대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35.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새롭게 접근할 때라고 본다. 해당국 정부는 유엔 인권 메커니즘 차원의 국가 방문을 점진적으로라도 허용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대화, 신뢰 구축, 그리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제공동체와의 협력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다. 기술 협력 기회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다.

B. 책임규명 독립전문가그룹

36. 인권이사회 결의 31/18에 의거하여 인권최고대표는 소냐 비셰르코(세르비아)와 사라 후세인(방글라데시)를 독립전문가로 임명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 책임 규명을 다루는 데 특별보고관을 지원토록 하였다. 인권이사회는 독립전문가그룹에 (ㄱ) 조사위원회가 파악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 특히 반인도범죄에 준하는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모색하고 (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반인도범죄 피해자를 위해 정의를 실현하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실질적 책임 규명 메커니즘을 제안토록 했다. 실질적 책임 규명 메커니즘은 국제형사재판소도 포함한다.

37. 독립전문가그룹은 2016년 9월 인권최고대표 임명을 받은 이후 제네바, 헤이그, 서울, 도쿄 및 뉴욕을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국제형사사법 학계 전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탈자 등 여러 이해당사자와 면담을 가졌다. 제네바와 서울 방문 시 특별보고관과 함께 한 일정도 있다.

38. 독립전문가그룹은 본 보고서 부속서로 권고를 제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 책임 규명은 다방면으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국제 규범과 기준을 따라야 한다. 독립전문가그룹은 국제공동체가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해 반인도범죄 책임 규명을 추진하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촉구했다. 또한 권고하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 범죄를 조사하며 관련 처벌은 불가피하고, 피해자와 사회가 진실을 알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인권 침해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도 반드시 취해야 한다. 독립전문가그룹은 특히 임시 국제재판소(ad-hoc international tribunal)를 설립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더하여 독립전문가그룹은 피해자 및 여타 이해관계자와 의견을 나누고 협의하도록 권고했다.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외에 거주하는 이들을 만나고, 인권 침해 책임 규명 관련 의견을 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동시에 협의에 참여하는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정신적 외상을 또 한 번 경험하는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독립전문가 그룹은 인권이사회와 총회에 권고하여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추가적인 자원을 제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 책임 규명에 더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모니터링 및 (인권 침해) 기록 활동을 국제 규범과 기준에 맞춰 강화하고, 동시에 국제 사법 전문가가 수집한 정보와 증거를 검토하여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향후 조사 및 기소 전략을 마련하며, 적절한 국제 재판 모델 혹은 국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형태의 재판 모델을 제안할 수 있다. 특별보고관은 독립전문가그룹 제안에 동의한다. 아울러 유엔 회원국,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독립전문가그룹 권고를 이행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가, 특히 반인도범죄에 준하는 사례가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확실히 할 것을 촉구한다.

C. 서울유엔인권사무소

39.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 (이하 “서울유엔인권사무소”)는 2015년 6월 23일 개소 후 특별보고관 지원을 비롯하여 임무를 수행해왔다. 인권이사회 결의 25/25에 의거하여, 서울유엔인권사무소는 (a) 책임 규명을 염두에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을 살피고 기록하며 (b) 관련 회원국 정부, 시민사회 및 기타 이해당사자와 협력하고 이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c)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 가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옹호 활동을 벌이고 지평 확대 노력을 기울이도록 임무를 부여 받았다.

40. 서울유엔인권사무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탈자와 인터뷰 및 여러 출처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등 여러 활동을 벌였다. 소셜미디어 등 플랫폼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옹호 활동을 진행했고, 한반도 비자발적 가족 분리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피해자와 인권을 중심에 둔 접근으로 상황을 구체화도록 관련 회원국, 시민사회단체 및 국제공동체에 구체적인 권고를 제시한다.⁴⁶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정보 수집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관련하여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서울유엔인권사무소와 협력하도록 재차 강조한다.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이 인권 교육 등 서울유엔인권사무소와 대화를 시작할만한 영역을 검토하기를 독려한다.

D. 시민사회단체

41. 특별보고관은 2016년 제네바(9월), 뉴욕(10월), 대한민국과 일본(11월)을 방문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및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를 만났다. 특별보고관은 해당국 내 녹록치 않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⁴⁶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분단의 아픔*

시민사회단체가 상당히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는 점에 놀랐다. 인권 침해 사례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조직적으로 자행된 심각한 인권 침해 책임 규명 방안을 모색하는 경우가 있고, 한편으로는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 및 사회 권리 향유, 특히 취약 계층의 권리 향유를 보장하고자 노력하기도 한다. 이들 시민사회단체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국가 및 지역 단위에서 협력하여 일부 권리 실현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행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장애인 관련 사안에 있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내 관계자와 국제 관계자가 협력하였고, 2016년 8월 홍수 발생 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도주의 단체가 공동으로 상황을 파악한 사례 등이 협력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준다.

4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기관 및 조직 다수를 언급했고, 언급된 기관/조직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 간 관계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해당국 내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설 자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권옹호자선언(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에 따르면 인권 및 기본 자유를 촉진하는 데 개인과 비정부단체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 인권 의무 준수를 위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국내 활동 허용할 것을 강조한다.

V. 결론 및 권고

43.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과 관련하여 병행 전략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특별보고관 및 기타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협력하도록 독려할 것을 강조한다. 중국에는 국가 방문을 확대하여 더욱 정확하고 폭넓은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국 정부가 인권 협약에 근거한 의무를 더욱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인권 침해, 특히 반인도범죄에 준하는 인권 침해를 다루려면, 인권 침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 이는 정의를 실현하고 더 이상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함이다. 관련하여 독립전문가그룹이 책임 규명 방안으로 제시한 조치를 유의미하게 참고할 수 있다. 협력 도모와 책임 규명은 상호 도움이 되며,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병행 전략은 필수적이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내 긴장 고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만큼이나 인권 상황에도 국제공동체가 주목해야 한다. 평화, 안보 및 인권 간 긴밀하게 상호 작용한다는 점에서 특히 안보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44.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을 우려하는 여러 관계자가 상황을 해결하고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고무된다.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활동이 해당국 내 인권을 촉진하고 보호하는 공통 목표(vision) 하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내에서 국제인권기준을 이해하고, 해당국 당국이 현재진행형인 인권 침해를 멈추도록 조치를 취할만한 역량을 가지도록 하고, 과거 인권 침해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재발을 막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국가 기관, 특히 조선로동당은 권고받은 정책 변화를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국민들도 의사결정 과정에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을만한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45.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다음을 촉구한다.

(a) 정치범 수용소 운영을 비롯하여 심각한 인권 침해를 멈추도록 즉각적이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b)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에서 수용한 권고 후속 조치를 이어가고 유엔 및 기타 관계자와 협력하여 권고를 이행한다. 특별보고관은 해당 권고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전략(common strategy)을 마련하여 달성가능하거나 관련성이 높은 권고를 우선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을 비준하고,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고, 독립 인권 기관을 설립하도록 여러 회원국이 권고했다.

(c)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유의미하게 협력하며, 이는 본 특별보고관 및 여타 주제별 위임권한 수행자가 국가에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d) 국제공동체가 인권을 촉진하고 보호하도록 돕고자 제안한 기술 협력을 수용한다. 해당 기술협력은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및 서울유엔인권사무소가 제안한 것을 포함한다.

(e) 주변국과 대화를 재개하여 분리 가족, 납치 피해자 및 기타 실종자 사례 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인권 현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f) 독립전문가 그룹 권고를 지체없이 이행한다.

46. 특별보고관은 인권이사회에 다음을 촉구한다.

(a) 책임규명 독립전문가그룹 권고를 지체없이 이행하여, 심각한 인권 침해 가해자에게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피해자 모두가 바라는 진실 규명과 정의 실현을 지원한다.

(b) 서울유엔인권사무소를 포함하여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서울유엔인권사무소가 독립적으로 기능하고 재정적으로 충분하게 자원을 보장받고 관련 회원국과 전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c)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촉구하여 특별보고관과 유의미하게 협력하도록 하며, 특별보고관이 빠른 시일 내에 전제 조건없이 특별절차 위임권한 수행자가 국가 방문시 적용하는 조건에 맞춰 해당국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

47. 특별보고관은 회원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양자 및 다자 협력을 지속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b)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인권 침해 피해자 및 목격자와 만날 수 있게 하는 등 특별보고관과 서울유엔인권사무소의 모니터링 노력을 지원한다.

(c) 여성과 아동을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이탈한 이들을 강제로 복송하지 않으며, 이들을 인신매매를 비롯한 학대로부터 보호한다.

(d) 독립전문가 그룹이 권고한 내용 중 관련 권고를 지체없이 이행한다.

(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사회, 경제, 문화 및 정치 협력 프로젝트를 이행할 때 반드시 인권 보호 및 촉진을 반영한다.

(f)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협력할 때 반드시 인권 바탕으로 접근하도록 하며, 정치 및 안보 고려가 인도적 지원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48. 특별보고관은 유엔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단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심각한 인권 상황을 해결하도록 촉구하며 유엔 사무총장의 인권최우선 (Human Rights Up Front) 정책을 따르길 촉구한다. 특별보고관은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인도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유엔 기관이 구금 시설, 교화소 및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를 포함하여 취약층이 인도적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길 촉구한다.

49. 특별보고관은 시민사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지하며, 사람을 중심에 둔 포괄적이며 균형잡힌 접근 방식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길 독려한다.
